



Welcome to
DKU~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Hi~

CONTENTS

● 복수지원 · 이중등록 · 합격자발표 유의사항	03
Ⅰ. 전형일정	04
Ⅱ. 모집인원	05
Ⅲ. 전형방법	08
Ⅳ.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09
Ⅴ. 서류제출	14
Ⅵ. 입학원서 접수 안내	18
Ⅶ. 지원자 유의사항	19
Ⅷ. 기타안내(장학, 생활관)	20
Ⅸ. 참고사항	20
● 각종 서식	22
● 문의 전화 안내	27
● 캠퍼스맵 / 교통안내	28

※ 본 모집요강의 내용은 일부사항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시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제작기준일 : 2024. 05. 31(금)]

복수지원 · 이중등록 · 합격자발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복수지원】 ○ 수시모집(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 원서접수 시,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우리 대학 죽전·천안캠퍼스 간 복수지원할 수 없음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지원 시 지원가능 횟수를 6회로 제한함 -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 정원내, 정원외(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 제외)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지원 횟수를 산정함 ○ 수시모집에서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원서 접수 순으로 횟수 초과한 입학원서는 모두 접수 취소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신중히 지원하여야 함 ○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전 교육과정 이수자 해당) 【이중등록】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는 합격한 대학 중 1개 대학의 1개 전형에만 등록(문서등록 또는 등록예치금 납부)하여야 함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에 충원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단국대학교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 :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024. 12. 26(목) 14:00이전까지 신청]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위반 시 조치사항】 ○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사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위반자검색시스템을 통해 적발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취소 처리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반환함) ○ 우리 대학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자는 입학취소 후 3년 동안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없음
합격자 발표	○ 합격자 중 미등록 또는 등록포기 인원이 발생할 경우 모집단위(계열)별 예비후보 순위에 따라 충원합격자를 선발함 ○ 1단계 합격자, 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발표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한 합격자 조회 페이지를 통하여 수험생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유선상 질의를 통한 합격자 조회는 불가함. 또한 합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전화를 통한 충원합격자 개별 통보 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하므로 이 기간 중에는 충원합격에 관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기하여야 함 [휴대전화, 전화번호, 추가전화번호(1) 순으로 3회까지 시도하여 연락되지 않는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 예비후보에게 합격을 통보함] ※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입학안내 홈페이지의 '지원자정보조회'를 통해 연락처를 변경해야 하며, 지원자가 원서수정 요청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오류 또는 연락두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기간		2024. 7. 8(월) 10:00 ~ 12(금) 17:00까지	- 인터넷 접수(24시간 접수 가능) - 진학사 원서접수 <jinhakapply.com> 18쪽 참고
서류제출 및 종합기록표 입력기간		2024. 7. 8(월) 10:00 ~ 15(월) 17:00까지	- 죽전·천안 지원자 모두 죽전캠퍼스 입학팀으로 서류를 제출함 - 지원자 종합기록표 : 진학사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입력 및 출력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대조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정일 방문 제출(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안내) - 등기우편은 7. 15(월) 우편소인까지 인정함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필기고사		2024. 7. 18(목) <10:00 ~ 11:00>	- 죽전·천안 지원자 모두 죽전캠퍼스에서 시행함 - 개인별 고사장소 : 7. 15(월) 입학안내 홈페이지 확인
1단계 합격자 발표		2024. 7. 23(화) 18:00	- 죽전 : 모집계열별 4배수 - 천안 : 모집계열별 3배수 -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발표함(개별 통보하지 않음)
최초합격	발표	2024. 9. 4(수) 16:00	- 최초합격자는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발표함 - 차수별 충원합격 및 등록 세부일정은 추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문서등록방법 : 온라인 문서등록 ※ 등록예치금은 납부하지 않음 - 문서등록 및 등록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록안내문' 참조 - 등록기간 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서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처리됨
	문서등록	2024. 12. 16(월) ~ 18(수) 16:00	
충원합격	발표	2024. 12. 19(목) ~ 26(목) 18:00	
	문서등록	2024. 12. 19(목) ~ 27(금) 22:00	
등록금 납부		2025. 2. 10(월) ~ 12(수) 16:00	

※ 상기 전형일정은 대학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추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ipsi.dankook.ac.kr)에 공지함



■ 죽전캠퍼스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비제한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최대모집 가능인원	계열별 모집인원		
인문	문과	국어국문학과*		3	39	모집인원 제한없음	
		사학과*		3			
		철학과		2			
		영미인문학과		3			
	법과	법학과*		6			
	사회과학	정치외교학과		3			
		행정학과*		3			
		도시계획 · 부동산학부		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4			
		상담학과		3			
	경영경제	경제학과*		4			
		무역학과*		4			
		경영학부*		12			
자연	공과	전자전기공학과*		5	40		
		융합반도체공학과		4			
		고분자시스템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3			
			파이버융합소재공학전공*	3			
		토목환경공학과*		5			
		기계공학과*		4			
		화학공학과*		5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5			
			건축공학전공*	3			
	SW융합	소프트웨어학과*		4			
		컴퓨터공학과		3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3			
		사이버보안학과		3			
총 계				79	—		

※ 재외국민은 모집단위별 최대모집 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계열별 입학성적 총점순으로 선발함

※ 퇴계혁신칼리지, 인문계열광역, 사회계열광역, 공학계열광역, SW융합계열광역, 프리무스국제대학, 사범대학, 음악 · 예술대학은 선발하지 않음

※ *는 비사범계열 학부(과)의 교직과정 설치 모집단위이며, 2025학년도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 외국인학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

※ 건축학전공(5년제) 신입생은 건축학교육인증(KAAB)을 위한 '건축학교육인증과정'에 배정되며,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건축공학전공, 고분자공학전공 신입생은 공학인증(ABEEK)을 위한 '공학전문교육과정'에 배정됨

— 건축공학전공 및 고분자공학전공은 2025년 3월 이후 입학생의 경우 전문교육과정의 지속 여부가 2028년 3월 이후 졸업부터 변경될 수 있음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재외국민		비제한
				최대모집 가능인원	계열별 모집인원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인문	외국어	아시아중동학부	중국학전공*	3	3	모집인원 제한없음
			일본학전공*	3		
			몽골학전공	3		
			중동학전공	3		
			베트남학전공	2		
		유럽중남미학부	독일학전공*	1		
			프랑스학전공*	1		
			스페인중남미학전공*	3		
			러시아학전공*	2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	2		
		영어과*		3		
		글로벌한국어과		1		
	공공인재	공공정책학과*	3			
		사회복지학과	3			
		식품자원경제학과	3			
	보건과학	보건행정학과	3			
	공공인재	공공정책학과(야)	1	1		
자연	과학기술	수학과*		3	4	모집인원 제한없음
		물리학과*		3		
		화학과*		3		
		식품영양학과*		3		
		신소재공학과*		3		
		에너지공학과		4		
		경영공학과		3		
		제약공학과		3		
	바이오융합	생명자원학부	식량생명공학전공*	3		
			동물생명공학전공*	3		
			환경원예학전공	3		
			녹지조경학전공	3		
		의생명과학부	의생명시스템학전공	3		
			생명과학전공*	3		
			미생물학전공	3		
		식품공학과*		3		
		코스메디컬소재학과		2		
	보건과학	심리치료학과	3			
	간호	간호학과*	-	-	2	

계열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재외국민		비제한
				최대모집 가능인원	계열별 모집인원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예능	예술	미술학부	공예(금속·섬유)전공	3	4	모집인원 제한없음
			동양화전공	3		
			서양화전공	3		
			조소전공	1		
		문예창작과		4		
		뉴뮤직학부	뮤직테크놀로지전공	2		
			재즈퍼포먼스전공	3		
			싱어송라이팅전공	3		
		체육	스포츠과학	생활체육학과		
스포츠경영학과				3		
국제스포츠학부	운동처방재활전공			1		
총 계				12	—	

※ 재외국민은 모집단위별 최대모집 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계열별 입학성적 총점순으로 선발함

※ 울곡혁신칼리지, 인문사회계열광역, 자연공학계열광역, 해병대군사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골프전공,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은 선발하지 않음

※ *는 비사범계열 학부(과)의 교직과정 설치 모집단위이며, 2025학년도에는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 외국인학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





①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지원구분	선발모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필기고사	서류심사	계
재외국민(국외근무자의 자녀)	1단계 [죽전 4배수, 천안 3배수]	100		100
	2단계	100 (1단계 성적)	P/F	100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일괄합산	100	P/F	100

※ 서류심사는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판단함(PASS/FAIL)

② 필기고사

캠퍼스	계열	과목별 반영비율(%)			출제문항	출제방식	고사시간
		국어	영어	수학			
죽전	인문	40	60		국어 20문항, 영어 20문항	5지선다형 객관식 (OMR카드 사용)	60분
	자연		40	60	수학 15문항, 영어 20문항		
천안	인문, 예·체능	40	60		국어 20문항, 영어 20문항		
	자연		60	40	수학 15문항, 영어 20문항		

※ 아래의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업특성을 고려하여 출제함 [출제범위는 해당 교육과정 내 공통교육과정을 포함함]

- ▶ 국어과 교육과정 :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 ▶ 영어과 교육과정 : 영어, 영어 회화, 영어 I,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 ▶ 수학과 교육과정 : 수학, 수학 I, 수학 II

③ 선발방법

캠퍼스	선발방법
죽전 · 천안	▷ 계열별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최대모집 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음 (동점자 발생 시 아래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함) ▷ 죽전 : 1단계 합격자는 필기고사 성적 순으로 계열별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최대모집 가능인원의 4배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천안 : 1단계 합격자는 필기고사 성적 순으로 계열별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되, 모집단위별 최대모집 가능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전교육과정 이수자와 북한이탈주민은 모집인원 제한 없이 선발함(간호학과 제외) ▷ 1단계 합격자, 전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함 ▷ 서류 미비 및 미제출자, 지원자격 미달자, 대학별고사 신분 미확인자 및 결시자, 부정행위자는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입생 선발 사정원칙에 따라 처리함

※ 동점자 처리기준

- ▶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이수자(간호학과), 북한이탈주민(간호학과)
 - [1단계] : 동점자 전원 선발
 - [2단계, 일괄합산] : ① 필기고사 영어 성적 ② 필기고사 영어 11~20분 문항 성적 ③ 외국소재 학교 총 이수학기 수(부모 근무 및 체류기간 고려하지 않음)
- ▶ 전교육과정 이수자(간호학과 제외), 북한이탈주민(간호학과 제외) : 동점자 전원 선발

IV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①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국내외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항 [자격구분별 자격요건](#) 및 '나'항 [자격구분별 국외 재학·근무·체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세부심사 기준은 10~13쪽 참조)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가. 자격구분별 자격요건

자격구분	자격요건
재외국민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근무자 :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외국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 상사직원, 공무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현지 취업자, 자영업자 등) ※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국의 영업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영업활동에 대한 세금 납부실적이 있어야 함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TOPIK 기준 [원서접수 시작일(2024. 7. 8) 기준, 유효한 성적에 한함] - 인문·자연계열 : TOPIK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지원 가능 - 예·체능계열 : TOPIK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지원 가능 - 해당국 정부지원 장학생, 자매결연대학 총(학)장 추천자는 TOPIK 1급 이상 자격 소지자 지원 가능 - TOPIK 급수에 따른 정규학점 신청기준 및 졸업요건은 21쪽 참조 ※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정식 입학하여 1학기 학기개시일부터 이수한 경우만 인정함 (1학년 1학기 중간 편입, 국내 미취학 후 1학년 2학기 신입학 등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 없이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지원 가능함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나. 자격구분별 국외 재학·근무·체류 인정기준

자격구분	국외 재학 · 근무 · 체류 최소 인정기간				
	학생		국외근무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재외국민 (국외근무자의 자녀)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 · 고교과정 3년 이상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3년 이상 (1,095일)	학생의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전교육과정 이수자	초 · 중 · 고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②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재외국민 지원자격(3년) 인정기간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국외재학기간	▷ 학생의 국외재학기간은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일자와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국외근무 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지원자격기간(3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생이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재학한 경우 ： 학기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첫 학기 수업시작일~마지막 학기 수업종료일)한 자는 학기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의 재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의 재학기간만 변경(축소)되는 것이며, 체류일수 및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국외체류기간	▷ 해당국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에 명시된 국내 체류기간을 제외한 기간 ※ 외국학교의 방학기간이라도 국내에 체류할 경우 국외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학생이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재학한 경우 ： 학기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국외근무기간	▷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은 역년(Calendar Year, 연도계산)으로 산정함 ▷ 재직(경력)증명서에 명시된 국외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현지 세금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은 학생의 국외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단, 학생이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재학하고 해당 1개 학년 기간(학기개시일~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 내 모든 학기를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 내에 이수(첫 학기 수업시작일~마지막 학기 수업종료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365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전체를 인정함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체류일수 산정 기준 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																		
자격기간 산정예시	[사례1] 학기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기간</th></tr><tr><td rowspan="3">실제기간</td><td>국외근무일자</td><td>2019. 2. 1 ~ 2020. 1. 31 (365일)</td></tr><tr><td>국외재학일자</td><td>2019. 3. 1 ~ 2020. 1. 10 (316일) [수업종료일 이후 귀국]</td></tr><tr><td>국외학교 수업시작 ~ 종료일</td><td>2019. 3. 1 ~ 2020. 1. 10 (316일)</td></tr><tr><td rowspan="2">인정기간</td><td>국외재학 인정기간</td><td>2019. 3. 1 ~ 2020. 2. 28 (365일) ※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하였으므로, 1개 학년의 재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td></tr><tr><td>국외근무 인정기간</td><td>2019. 2. 1 ~ 2020. 1. 31 (365일) ※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 내에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하였으므로 근무기간 전체를 인정함</td></tr><tr><td colspan="2">체류일수 산정 기준기간</td><td>2019. 3. 1 ~ 2020. 2. 28 (365일)</td></tr></table> ▶ [국외재학] 학생이 학기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재학하지 않았지만, 예외규정에 따라 1개 학년의 재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국외근무] 국외근무자의 근무일자 중 '2019년 2월'과 '2020년 1월 10일 이후의 기간'은 학생 재학기간과 중첩되지 않지만, 예외규정에 따라 최대 365일의 범위 내에서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기간으로 인정함 ▶ 단, 위의 예외규정은 각각 '재학 인정기간' 및 '근무 인정기간'에 한해 적용되므로, 체류일수 산정 기준기간은 변경되지 않음	구분		기간	실제기간	국외근무일자	2019. 2. 1 ~ 2020. 1. 31 (365일)	국외재학일자	2019. 3. 1 ~ 2020. 1. 10 (316일) [수업종료일 이후 귀국]	국외학교 수업시작 ~ 종료일	2019. 3. 1 ~ 2020. 1. 10 (316일)	인정기간	국외재학 인정기간	2019. 3. 1 ~ 2020. 2. 28 (365일) ※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하였으므로, 1개 학년의 재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국외근무 인정기간	2019. 2. 1 ~ 2020. 1. 31 (365일) ※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 내에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하였으므로 근무기간 전체를 인정함	체류일수 산정 기준기간		2019. 3. 1 ~ 2020. 2. 28 (365일)
구분		기간																	
실제기간	국외근무일자	2019. 2. 1 ~ 2020. 1. 31 (365일)																	
	국외재학일자	2019. 3. 1 ~ 2020. 1. 10 (316일) [수업종료일 이후 귀국]																	
	국외학교 수업시작 ~ 종료일	2019. 3. 1 ~ 2020. 1. 10 (316일)																	
인정기간	국외재학 인정기간	2019. 3. 1 ~ 2020. 2. 28 (365일) ※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하였으므로, 1개 학년의 재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국외근무 인정기간	2019. 2. 1 ~ 2020. 1. 31 (365일) ※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 내에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하였으므로 근무기간 전체를 인정함																	
체류일수 산정 기준기간		2019. 3. 1 ~ 2020. 2. 28 (365일)																	

구분	심사기준	
자격기간 산정예시	[사례2] 학기 중간에 편입한 경우	
	구분	기간
	실제기간	국외근무일자 2019. 10. 1 ~ 2019. 12. 31 (92일)
		국외재학일자 2019. 9. 1 ~ 2020. 1. 10 (132일)
	인정기간	국외근무 인정기간 2019. 10. 1 ~ 2019. 12. 31 (92일)
		국외재학 인정기간 2019. 10. 1 ~ 2019. 12. 31 (92일)
기타사항	체류일수 산정 기준기간 2019. 10. 1 ~ 2019. 12. 31 (92일)	
	▶국외재학과 국외근무가 중첩된 기간만 재외국민 지원자격(3년) 기간으로 인정되므로, '2019년 9월'과 '2020년 1월'의 기간은 국외재학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부모의 이혼 시 국외근무자는 반드시 친권자여야 함 ※ 이혼일자 이전까지는 부모와 학생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혼 후에는 친권자(국외근무자)와 학생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됨	

나. 외국학교 교육과정 및 재학 관련 세부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외국학교 인정기준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외국학교로 인정하며, 외국의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사이버 교육과정, 홈스쿨링,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함

※ 단,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해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제3국 수학을 인정함

[제3국 수학 사유서(대학 소정양식) 및 증빙자료 제출]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공통사항]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외국학교 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2개 이상 국가(학제)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음

▶13년제 외국학교는 12년제 기준으로 한 학년씩 학년을 내려서 계산함(11~13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산정)

※ A Level 과정 이수 시 A2 Level 까지 모두 마쳐야 함(AS Level 까지만 마친 경우 고교졸업학력 불인정)

▶우리나라 12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학기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단, 전·편입학 시의 월반은 불인정)

※ 월반 또는 조기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전·편입학 시 월반한 경우(예 : 뉴질랜드)라도, 전·편입학 시의 월반은 인정하지 않음

▶동일 학년(학기)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학기로 대체 가능한 누락학기는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을 의미하며, 단순누락 학기(질병, 휴학 등 개인 사유 및 전·편입 시 월반으로 발생하는 결손 등)는 대체할 수 없음

▶국내·외 검정고시는 인정하지 않음

구분	심사기준								
외국학교 교육과정 인정기준 [전교육과정 이수자 추가사항]	[전교육과정 이수자 추가사항] ※ '재외국민(국외근무자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1개 국가(학제)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함 (10학년제~13학년제 모두 해당) ▷외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지원 가능함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정식 입학하여 1학기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이수한 경우만 인정함 ※ 1학년 1학기 중간 편입, 국내 미취학 후 1학년 2학기 신입학 등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학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가능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재학기간 인정기준	▷국내·외 학교 간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기를 중복하여 이수한 경우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외국 재학 기간으로 인정함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부터 수업종료일까지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재학기간(이수학기)으로 인정하며, 유급한 학기는 제외함 ※ 학교 간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수업 결손이 있는 학기는 총 수업일수의 1/2이상을 재학한 경우에 한하여 출결, 성적 취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함 ▷재학증명서상의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한국학제 기준)를 이수한 경우 1년 재학으로 인정함 ※ 학교 간 전·편입학하는 과정 등으로 학기개시일부터 재학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이 되는 일까지를 1년 재학으로 인정할 수 있음 ▷외국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까지를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은 국가(예 : 일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대학 입학 후 고교졸업을 인정할 수 있음 ▷졸업예정자 중 지원자의 졸업시점에 부모의 근무·체류기간 등 모든 지원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건부로 인정하되, 지원자의 졸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2025. 2. 19(수)까지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기타사항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과 수업종료일이 명시된 자료(School Profile, School Calendar 등)를 충분히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인정받지 못하는 재학기간 발생 등)은 학생 본인의 책임임 ▷입학허용기간(고교졸업 후 경과기간) 제한은 없음 ▷학교가 폐교되어 관련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지원자격 검토 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근무자의 근무, 학생의 재학, 학생 및 부모의 체류 등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예외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후 코로나-19) 관련 예외사항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관련 대교협에 지침에 따른 것으로, 2025학년도에는 대교협 지침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항 발생 시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원서접수 전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하여야 함 (변경사항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온라인 수업 재학기간 인정여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 진행 시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단, 해당 고교에서 학기의 이수가 인정되어야 하며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온라인 수업기간 동안 국내체류 시 원칙적으로 국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사항에 관한 소명서류 제출 시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재학/재직/체류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재학/재직/체류하지 못한(지원자격 미충족) 경우, 해당사유와 소명서류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지원자격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재학기간</td><td>온라인 수업기간, 학교 폐쇄기간 등이 명시된 학교 자체 발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td></tr> <tr> <td>재직기간</td><td>기관 폐쇄기간, 코로나-19 원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급여 미지급 기간 및 사유 등이 명시된 기관 자체 발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td></tr> <tr> <td>체류기간</td><td>해당 기간에 국내에 체류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예외인정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외교부의 '각국의 국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과 제출한 재학/재직관련 소명서류, 출입국 기록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여 체류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td></tr> </tbody> </table> ▷소명서류 관련사항 ▶학교/재직기관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직인과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성명, 생년월일,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해당사유에 따른 소명기간을 명시 ▶소명서류, 해당사유, 해당국의 코로나-19 유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류가 부적합하거나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내용	재학기간	온라인 수업기간, 학교 폐쇄기간 등이 명시된 학교 자체 발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재직기간	기관 폐쇄기간, 코로나-19 원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급여 미지급 기간 및 사유 등이 명시된 기관 자체 발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체류기간	해당 기간에 국내에 체류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예외인정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외교부의 '각국의 국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과 제출한 재학/재직관련 소명서류, 출입국 기록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여 체류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재학기간	온라인 수업기간, 학교 폐쇄기간 등이 명시된 학교 자체 발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재직기간	기관 폐쇄기간, 코로나-19 원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급여 미지급 기간 및 사유 등이 명시된 기관 자체 발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체류기간	해당 기간에 국내에 체류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예외인정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외교부의 '각국의 국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과 제출한 재학/재직관련 소명서류, 출입국 기록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여 체류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전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인정

학년/학기	1	2	3	4	5	6	7	8	9	10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B국가(10년제)									고1	고2	고3		

10년제

□ 2개국 이상 - 12년 기준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수학하였거나 국내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한 경우 인정

학년/학기	1	2	3	4	5	6	7	8	9	10	대학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A국가													
B국가(10년제)										고1	고2	고3	

□ 2개국 이상 - 고교과정(9~11학년)을 한 국가에서 모두 이수한 경우 **전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인정

학년/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A국가													
B국가(11년제)									고1	고2	고3		

11년제

□ 2개국 이상 - 고교과정을 한 국가에서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 12년 기준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수학하였거나 국내 고등학교 3학년에 편입한 경우 인정

학년/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대학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A국가													
B국가(11년제)										고1	고2	고3	

12년제

□ 2개국 이상 - 학제 차이로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한 경우 인정

학년/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A국가													
B국가(12년제)								누락		고1	고2	고3	

□ 13년제 학교는 1개 학년씩 내려서 학년을 산정함(11~13학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학년/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A국가(12년제)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B국가(13년제)									<<	중3	고1	고2	고3

13년제

학년/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A국가(12년제)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고2	고3	
B국가(13년제)								<<	중2	중3	고1		

□ 학제 차이로 인해 중복하여 수학한 학기를 학제 차이로 인해 누락된 학기로 1개 학기 이내에서 대체하여 인정

학년/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A국가		중복				중복							
B국가(12년제)				대체				대체		누락	고2	고3	

□ 국외 학교 간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기를 중복하여 이수한 경우,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외국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므로 아래 상황은 **불인정**
 [(11-2)학기는 중복학기로 1개 학기만 외국 재학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총 5개 학기만 이수한 것이 됨]

학년/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12년제)													
A국가(12년제, 로컬)											중복		
A국가(12년제, 인터)													

기타

□ 국내에서 국외로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기를 중복하여 이수한 경우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외국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므로 아래 상황은 **불인정**
 [(10-1)~(10-2)학기를 중복이수하였으므로 그 중 1개 학기만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총 5개 학기만 이수한 것이 됨]

학년/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12년제)										중복			
A국가(12년제)										고1	고2	고3	

인정기간



① 서류제출 절차 및 방법

서류제출

▷제출기간 : 2024. 7. 8(월) ~ 15(월) <10:00 ~ 17:00>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 [7. 15(월) 우편소인까지 인정함]
 ▷제출장소 : 죽전·천안캠퍼스 지원자 모두 죽전캠퍼스 입학팀으로 제출
 ▶주소 :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입학팀(범정관 104호)

※ 서류봉투 부착용 주소라벨을 서류봉투에 부착하여 제출(방문 제출자도 해당)
 ※ 원본대조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제출을 허용함
 ▶지원자별 지정된 일자에만 방문 가능함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지]
 ▶방문제출 일정 : 2024. 7. 8(월) ~ 15(월) <10:00 ~ 17:00> 중 1일(지원자별 지정일자)
 ※ 사본 제출 시 ①서류 원본과 ②사본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원본대조 확인 후 제출



서류 접수(도착)여부 확인

•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ipsi.dankook.ac.kr) → 지원자정보 조회
 → 서류제출 결과 확인(서류도착일 기준 19:00 이후 확인 가능)

② 서류제출 유의사항

- ▶ 외국에서 발행한 모든 서류(외국학교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및 기타 공문서)는 반드시 해당국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해당국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생략 가능
 -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및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현황은 20~21쪽 참조
-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입학팀에 서류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고 방문하여 원본대조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 ▶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반드시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모든 제출서류는 2024. 6. 3(월) 이후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되되, 재학·근무·체류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외국서류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 조기졸업, 월반, 성적 및 재학기록 폐기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 또는 해당국 교육기관에서 사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 제출서류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해당국 법원 또는 재외공관장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졸업예정자로 지원하여 최종 합격한 자는 2025. 2. 19(수)까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득한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를 지원한 캠퍼스 입학팀에 반드시 추가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함
 - ※ 국내 고등학교 및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 ※ 재학·근무·체류기간 등 지원자격이 지원자의 졸업예정일까지 산정해야 충족하는 경우 지원자의 졸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지원자, 국외근무자, 배우자의 서류 일체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학생이 국외근무자의 근무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수학한 경우, 제3국 수학 사유서(본교 소정양식) 및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 ▶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자격 심사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국가별 인정 세금 납입서류

- 세금 납입서류는 해당 국가 조세(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식서류만 인정함

※ 해당 국가 **조세(정부)기관에서 발급받지 않은 서류(기업의 회계장부, 회계법인 등이 발행한 서류 등)는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국외근무기간 불인정)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세금 납입서류는 지원자격기간 내 해당기업의 영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세금 납입서류에는 월별 납부내역이 명기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분기(연도)별 내역만 명기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우리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인정여부를 결정함

- 개인소득세는 아래 해당 서류를 참고하여 제출(아래 국가 이외의 국가는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국가	조세기관	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남아프리카공화국	SARS	Form-IT 44(Extract of Income)
뉴질랜드	Inland Revenue Department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Form-IR3 ② Earnings Information for Income Tax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1040(또는 1040-EZ, ES 등) 사본(COPY) ② Tax Return Transcript
베트남	Tổng cục Thuế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Certificate of Personal Income Tax Paid in Vietnam ② Certificate of Personal Income Tax Withholding
싱가포르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Notice of Assessment
영국	HM Revenue & Customs	Form-SA 100, 102 등
인도	Income Tax Department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ITR-V(Indian Income Tax Return Verification Form) ② Indian Income Tax Return Acknowledgement
인도네시아	DIREKTORAT JENDERAL PAJAK	①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며, 이와 함께 본인 상황별로 ②~④중 택1하여 제출 ① 1721-A1 ② 1770S 전체[Attachment(LAMPIRAN)]~II 포함 필수] ③ 1770 전체[Attachment(LAMPIRAN)]~IV 포함 필수] ④ 1770SS(연간소득 합계액 6천 루피아 이하)
일본	國稅廳	현·부·도·시민세과세증명서
중국	國家稅務總局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1~12월 세수완납증명(稅收完稅證明) ② 1~12월 세수완납집계증명(稅收完稅匯總證明)
필리핀	Bureau of Internal Revenue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BIR-1700(근로소득자) ② BIR-1701(개인사업자 또는 전문직종사자)
홍콩	Inland Revenue Department	본인 상황별로 ①~②중 택1하여 제출 ① Notice of Assessment ② Tax Return (Year of Assessment)

③ 제출서류

지원구분	제출서류
재외국민 (국외근무자의 자녀)	[공통 제출서류] ① 지원자 종합기록표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입력 및 출력 후 제출] ② 학력조회동의서 [재학한 외국소재 중·고교는 모두 제출, 중·고교과정이 통합된 학교는 1부만 제출] ※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제출 생략 ③ 외국학교 조사표 [재학한 외국소재학교 모두 기재] ※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과 수업종료일이 명시된 자료(School Profile, School Calendar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④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⑤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⑥ 초·중·고교 재학(사실)증명서 [학년, 입학(전입)일과 졸업(전출)일 명시] ※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연/월/일 모두 기재)된 경우 제출 생략 ⑦ 지원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이혼, 사망, 본인 입양 등의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⑧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부모] ⑨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 [지원자, 부모] ⑩ 여권 사본 [지원자, 부모] ⑪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국외거주사실 증명서류 [지원자, 부모]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아래 목록 중 국외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국외 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 체류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증명 - 체류국 외국인등록증 -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⑫ 제3국 수학 사유서[대학 소정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국외 파견 재직자 추가 제출서류] ⑬ 국외근무자 재직증명서 [소속부서, 직위, 근무국가, 국외 근무기간 명시] ⑭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사본 [국내 금융권 발행, 본사 또는 은행 원본대조필 날인] ※ 국외근무 시작일 이전에 승인된 서류 제출 ※ 재직증명서와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및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의 회사명이 다를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 [현지 취업자 추가 제출서류] ⑬ 국외근무자 재직증명서 [소속부서, 직위, 근무국가, 국외 근무기간 명시] ⑭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⑮ 재직회사 법인세 납부이력 [회사명 명시, 지원자격 기간 내 납부내역 모두 제출] ※ 대외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세 납부이력 제출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소득세 납입증명서 제출 [국외근무자 성명 명시, 지원자격 기간 내 납부내역 모두 제출] [현지 자영업자 추가 제출서류] ⑬ 국외 영업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⑭ 자영업자의 국외 세금납부증명서(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사업체명 명시(법인세), 국외근무자 성명 명시(개인소득세), 지원자격 기간 내 납부내역 모두 제출] [선교사 추가 제출서류] ⑬ 선교사 활동(재직) 증명서 [소속종교단체, 선교국가, 국외 선교기간 명시]

지원구분	제출서류
전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공동 제출서류] ① 지원자 종합기록표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입력 및 출력 후 제출] ② 학력조회동의서 [재학한 외국소재 중·고교는 모두 제출, 중·고교과정이 통합된 학교는 1부만 제출] ※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제출 생략 ③ 외국학교 조사표 [재학한 외국소재학교 모두 기재] ※ 학기개시일(수업시작일)과 수업종료일이 명기된 자료(School Profile, School Calendar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④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⑤ 초·중·고교 성적증명서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⑥ 초·중·고교 재학(사실)증명서 [학년, 입학(전입)일과 졸업(전출)일 명시] ※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에 재학기간이 명시(연/월/일 모두 기재)된 경우 제출생략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원자] ⑧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지원자] ⑨ TOPIK 인증서 [원서접수 시작일(2024. 7. 8) 기준, 유효한 성적에 한함] ⑩ 신분증 사본 [지원자] [재외국민 추가 제출서류] ⑪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국외거주사실 증명서류 [지원자]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아래 목록 중 국외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국외 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 체류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증명 - 체류국 외국인등록증 -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외국인 추가 제출서류] ⑪ 외국시민권 및 여권사본 [외국시민권은 외국국적 취득일자 포함] ⑫ 외국인등록증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⑬ 지원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⑭ 재정보증서 [대학 소정양식] 및 국내외 은행잔고증명서 [USD 10,000이상, 본인 또는 부모 명의] ※ 내국인(한국)이 보증인인 경우 국내외 은행잔고증명서 대신 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출 ※ 재정능력 입증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의 잔고내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⑮ 장학금 지급확인서 [해당국 정부지원 장학생에 한함] ⑯ 자매결연대학 총(학)장 추천서 [자매결연대학 총(학)장 추천자에 한함] [결혼이주민 추가 제출서류] ⑪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지원자] ⑫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북한이탈주민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지자체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담당관 발급] ② 학력인정증명서 [각 시·도교육청 발급]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출신자는 합격증명서 제출





① 접수기간 : 2024. 7. 8(월) 10:00 ~ 12(금) 17:00까지

② 접수사이트 및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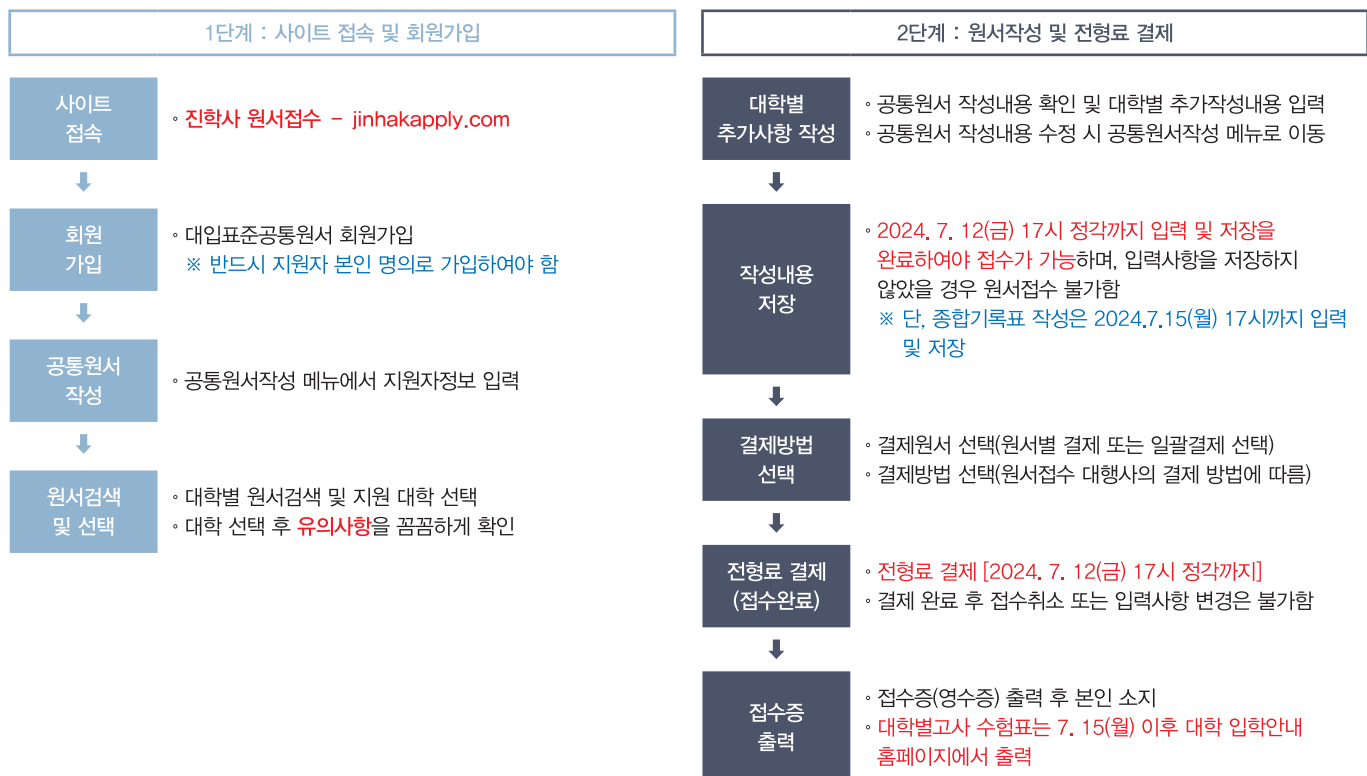
접수사이트	연락처	비고
진학사 원서접수 (jinhakapply.com)	1544-7715	접수 관련 장애 발생 시 해당 접수사이트 연락처로 문의

③ 전형료

전형명	전형료
재외국민(국외근무자의 자녀), 전교육과정 이수자	150,000원 [필기 : 70,000원, 서류평가 : 80,000원]
북한이탈주민	70,000원 [필기 : 70,000원, 서류평가(80,000원) 면제]

-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대학에서 부담함
- ※ 원서접수 후 취소는 불가하며, **결제된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지원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 인해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고사일로부터 **1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해 심사 후 전형료 전액을 환불함]
- ※ 재외국민(국외근무자의 자녀) 1단계 불합격자는 2단계 전형료(서류평가 80,000원)를 원서접수 시 기재한 국내 은행계좌로 2024년 8월 중 환불함(은행 계좌는 사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전형료 잔액 발생 시 지원자가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함

④ 접수방법



⑤ 입학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입학원서 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후에는 입력사항의 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하므로 모집요강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전형료 결제 전 입력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함
- ▶입학원서 접수 시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은 입학전형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 ▶입학원서 접수의 효력은 지정된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 부여와 동시에 발생함
- ▶입력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오기(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원서 접수사이트의 안내사항 참조

VII

지원자 유의사항



1. 입학시험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행 방법(제출서류 위·변조, 대리시험 등)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해당년도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4. 고사당일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등 전자·통신기기와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기기를 소지하고 고사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합격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5. 고사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수험표 출력 : 2024. 7. 15(월) 이후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출력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및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단,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인정하지 않음)
6. 필기고사 진행 시 우리 대학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출입제한 및 강제퇴실 조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자가격리자 등의 고사응시 가능여부 및 방법은 추후 공지사항 참조)
7. 입학생은 대학에서 학력조화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8. 전형기간 중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지원자정보조회' 메뉴에서 수정하여야 함
9. 연락처의 오류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합격취소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10. 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익신청·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함
 - ▶이의 신청접수 → 이의 타당성 검증 → 이의 타당성 재검증 → 이의 결정사항 통보
11. 입학 후 모든 사항은 우리 대학 학칙에 따름
12. 우리 대학에서는 외국어교육 증진을 위해 '졸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13. 대학별고사 등 전형 진행과정에서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특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연락하여야 함
14. 우리 대학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으로 5년 인증을 획득하였음
(인증기간 : 2020. 6. 11 ~ 2025. 6. 10)
15. 본 모집요강의 모든 내용(각종 안내사항 포함)은 지원자에게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모집요강 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16. 입학원서 접수 완료 후 부여되는 수험번호는 개인정보이므로 절대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VIII

기타안내(장학, 생활관)



① 장학 안내

■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ipsi.dankook.ac.kr) → 대학안내 → 장학안내

② 생활관 안내

죽전캠퍼스 | 생활관 행정팀

☎ 031-8005-2905~8

📧 domi.dankook.ac.kr



천안캠퍼스 | 생활관 행정팀

☎ 041-550-1162~4

📧 chdomi.dankook.ac.kr



IX

참고사항



■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현황 (2024. 3. 교육부 기준)

국가명	학교명
일본(4개교)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중고등학교,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소중고등학교, 건국한국학교
중국(13개교)	웨이하이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옌타이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북경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국제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대만(2개교)	타이베이한국학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베트남(2개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2개교)	리야드한국학교, 젯다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캄보디아	프놈펜한국국제학교
계	16개국, 34개교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2024. 1. 외교부 기준)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22개국)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52개국)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2개국)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31개국)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13개국)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5개국)
계	125개국

■ 전교육과정 이수자 정규과정 학점 신청기준 및 졸업요건

TOPIK 급수	학점 신청기준	졸업요건	비고
3급 이상	일반학생과 동일함	TOPIK 4급 이상 (졸업 직전학기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위급수의 TOPIK 성적증명서 제출 시 학점 제한을 완화함
2급	학기당 정규학점 12학점까지 신청 가능		
1급	학기당 정규학점 6학점까지 신청 가능		

※ 상기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세부내용은 입학 후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참조)

각종 서식

※ 아래 서식은 견본이며,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입력 및 출력 후 제출해야 함

지원자 종합기록표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국적
자격구분 선택	☐ 국외 파견재직자(상사직원의 자녀) ☐ 현직취업자 ☐ 현지자영업자 ☐ 선교사 ☐ 기타 ☐ 전교육과정 이수자				

1. 지원자 재학정보

학교				재학기간	
학교명	학제	소재국	도시명	기간	학년-학기 ~ 학년-학기
				~	~
				~	~
총 재학기간 : 년 개월 일				외국학교 재학기간 : 년 개월 일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12년 전체) 재학한 순서대로 모두 작성(국내외 포함)

※ 재학기간은 재학(사실)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명시된 입학일(전입일)과 졸업일(전출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13학제의 경우 1개 학년씩 내려서 작성(예시 : Year 11 → 10학년)

2. 특이사항

학년/학기	특이사항

※ 학기누락, 조기졸업, 특이한 교육과정, 학기중 국내 체류기간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3. 체류기간 (학생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재학기간 내에서 작성)

구분	체류기간		비고
	출국일자	입국일자	
지원자			
총 체류기간 : 년 개월 일			
국외근무자			
총 체류기간 : 년 개월 일			
배우자			
총 체류기간 : 년 개월 일			

※ 출입국사실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하여야 함

4. 국외근무자의 국외 근무기간 정보 (학생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재학기간 내에서 작성)

구분	소재지		회사명	국외근무기간								
	국가명	도시명		기간						총 근무기간		
국외근무자1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국외근무자2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일

- ※ 최초 근무국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입력하여야 함
- ※ 국외근무자의 국외 근무기간은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 ※ 자영업자의 국외 근무기간은 해당국에 세금 납부한 기간을 입력하여야 함

위의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제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상기 입력사항 및 서류로 제출한 정보는 전형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지원자격 심사 거부로 간주하여 불합격처리 합니다.

2024. 07.

지 원 자 성명 : _____ (인)

Official Agreement for Enrollment and Academic Credits

학력조회동의서 (学历调查同意书)

To whom it may concern

尊敬的校领导

This letter is to confirm that I attended _____
(school name)

此信为确认我曾参加过 _____ (校名)的课程所用.

I have applied to **Dankook University** in (Jukjeon or Cheonan), South Korea for 2025 academic year and I agreed that **Dankook University** could rightfully make a request to you for my school records.

我已申请成为韩国檀国大学(竹田或天安)2025年上学年的学生, 我在此同意檀国大学适当地对我的学校档案进行查证.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ask you to provide full assistance to **Dankook University** when they contact you regarding verification of enrollment and transcript.

在此,我请求,在檀国大学为了查证我的入学情况和成绩联系母校时,请母校提供充分的援助.

Applicant Name [申请人姓名]			
Date of birth [出生日期]			
School Name/Country [学校名]	School Name		Country
Date of admission/graduation [入学(或转学)/毕业(或休学)]	Date of admission(transfer)	Date of graduation(withdrawal)	
School Address [学校地址]			
School E-mail Address [学校E-mail地址]			
School Telephone/Fax [学校电话/传真]	Telephone Number	Fax Number	
Person in Charge [学校负责人]	Name	E-mail Address	

Sincerely yours,

敬启

Signature (签名) _____ Date (日期) _____



Financial Certification for Admission

재정보증서 (财政保证书)

Korean Name (申请人韩国名字)	Family(Last/Sur) name	First name	Middle name(in full)
English Name (申请人英语名字)	Family(Last/Sur) name	First name	Middle name(in full)
Date of Birth (出生年月)		Place of Birth (出生地)	
Gender (性别)	☐ Male (男) ☐ Female (女)	Nationality (国籍)	
Marital Status (婚姻状况)	☐ Single (未婚) ☐ Married (已婚)	Present Occupation (职业)	
Permanent Address (永久住址)			
E-mail Address (通讯地址)			
Telephone Number (电话号码)	in Korea (韩国内)	in your own country (中国)	
	() – () – ()	() – () – ()	

You and your sponsor must provide for your educational and living expenses for the duration of your entire educational program at Dankook University. Also, educational and/or living expenses must be provided for your husband or wife and/or children who will be accompanying you.

Please attach a bank certification indicating that either you or your sponsor have at least USD 10,000 for at least a period of one month in your or your sponsor's account.

在檀国大学滞留期间所需学费生活费必须由学生本人或财政保证人支付, 这笔滞留费必须达到能够支付偕同 家人的情况下家人的滞留费的金额.次财政保证书须和能够证明滞留费的下列文件一起提交.

本人或者财政保证人的 韩币10,000,000以上 的国内银行存款证明书 (以前一直存入在银行) 或者 内国人(韩国人)的财政保证书.

If you are not paying for your own educational and living expenses, please indicate the person or organization who is paying for you.

如果本人不能保证在檀国大学的滞留费的话,请填写能够给予财政保证的人或机关.

Name (财政保证人 姓名)	
Relationship to Applicant (跟申请人关系)	
Occupation (职业)	
Address (地址)	
Telephone Number (电话号码)	

"I guarantee that the amount of US\$ will be available for the above named applicant and/or husband or wife and/or children for the entire duration of this program."

本人必须承诺支付上述檀国大学申请人和家庭人员在檀国大学滞留期间所需费用.

Signature (签名) _____ Date (日期) _____



외국학교 조사표 [작성 예시]

성명	김 단 국	수험번호	H123456	생년월일	2006.09.16
자격구분 선택	☒ 국외 파견재직자(상사직원의 자녀) ☐ 현지취업자 ☐ 현지자영업자 ☐ 선교사 ☐ 기타 ☐ 전교육과정 이수자			모집단위	국어국문학과

학교명	학교정보	학기 정보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DK International School Washington (10/11/12/13 학년제)	학교주소 : 50 Dankook St Nw, Washington, DC 20422, USA 홈페이지 : www.dkwashington.com 담당자 E-Mail : dkwashington@dankook.ac.kr 전화번호 : +1 202-1234-5678	1학기	2010.02.05	~	2010.06.13
		2학기	2010.08.16	~	2010.12.20
		3학기	해당없음	~	
		4학기	해당없음	~	
	학교주소 :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전화번호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10/11/12/13 학년제)	학교주소 :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전화번호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학교주소 :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전화번호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10/11/12/13 학년제)	학교주소 :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전화번호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위의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지원자 : _____ (인)

- 국외 소재 초·중·고교의 정보만 기입하며, 학교별 대표 일정을 하나씩만 명기함(학년별로 기입할 필요 없음)
- 3학기, 4학기 정보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입
- 각 학교 학제 및 학기일정 확인자료(School Profile, School Calendar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문의 전화 안내

단국대학교 대표 전화 1899-3700

	죽전캠퍼스	천안캠퍼스
입학 문의	입학처 입학팀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전화 : (031) 8005 - 2550~3 팩스 : (031) 8021 - 7112	입학처 입학팀 [311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전화 : (041) 550 - 1234~6 팩스 : (041) 559 - 7900
		학생부종합전형 문의 전화 : (041) 550 - 1126~9 팩스 : (041) 559 - 7812
학사행정 문의	교무처 학사팀 전화 : (031) 8005 - 2053~9	교무처 학사팀 전화 : (041) 550 - 1222~7
교직이수 문의	사범대학 교학행정팀 전화 : (031) 8005 - 3783~4	교직이수 문의 전화 : (041) 550 - 1860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문의	학생처 장학팀 전화 : (031) 8005 - 2091~4	학생처 장학팀 전화 : (041) 550 - 1321~3
생활관 문의	생활관 행정팀 전화 : (031) 8005 - 2905~8	생활관 행정팀 전화 : (041) 550 - 1162~4

인터넷 검색창

단국대학교 입학안내

검색

단국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입사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캠퍼스맵 / 교통안내

죽전캠퍼스



○ 대중교통

역명	탑승장소 및 노선
죽전역(단국대)	3번 출구 좌회전 후 도로 단국대 셔틀버스 무료 탑승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24, 720-3번(교내진입), 40, 660번(정문 앞 하차)]
오리역	4번 출구 앞 마을버스 39-1번(교내진입), 25, 39번(정문 앞 하차) 7번 출구 앞 광역버스 8100, 1101, 7007-1, 102번(교내진입)
정자역	3번 출구 앞 광역버스 8100, 1101, 102번(교내진입)

※ 경기도 성남시 단대동의 '단대오거리'는 우리 대학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교통수단 :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길> 참조

천안캠퍼스



대중교통

교통수단	경로
지하철	1호선 '두정역' 하차 ➡ 횡단보도 건너편 11번 시내버스 이용 ➡ 단국대
버스	천안고속(시외)버스터미널 하차 ➡ 횡단보도 건너편 11번 시내버스 이용 ➡ 단국대

기타 교통수단 :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길> 참조



ipsi.dankook.ac.kr

죽전캠퍼스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T. 031.8005.2550~3

천안캠퍼스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T. 041.550.1234~6

단국대학교 대표전화 1899-3700